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 세무1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15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의 병역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희생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까지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확대 요청함에 따라 기본복지를 지원하고자 함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개정(2021.4.6.)으로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6조)

- 1)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6호, 제7호)
 - 제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7호 「고엽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 「고엽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 신설 (제10호, 제11호)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별표에 반영 (안 별표 제1호가목(1), 별표 제2호나목(10)(나), (12)(가) 및 (17)(가))

| | | | | | | | |
|--|--|--|--|--|----|--------|----|
| 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확인 신청 (나)~(다) (생략) (13)~(16) (생략) (17) <신설> (가) <신설> | | | |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확인 신청 (나)~(다) (현행과같음) (13)~(16) (현행과같음) (1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u>관상어 양식업 신고</u> | 관상 | 1,000원 | 신설 |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에서 서울시로 개정 요청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그 유가족에 대해 수수료 감면의 기본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현행 | | | | 개정안 | | | |
|---|----|--------|----|---|----|------------------------------------|--|
|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 | | |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 | | |
| 종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종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 가. 생략 (1) 세목별 과세증명서 (2)~(4) (생략) | 관상 | 800원 | | 가. (현행과같음) (1) 세목별 과세증명서 (2)~(4) 현행과 같음 | 관상 |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 변경 (일부 무료) |
| 2. 각종 인·허가에 관한사항 | | | | 2. 각종 인·허가에 관한사항 | | | |
| 종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종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 가. (생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9) (생략) (10)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사항 (가) (생략) (나) 소음·진동 배출 시설 변경 신고 (11) (생략)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사항 (가)차고지설치(운송 | 관상 | 5,000원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가)차고지설치(화물 | 관상 | 1,500원 | 삭제 변경 (형식) |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정의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대상유형 : 순직(전몰)군경, 전상(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대상유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대상유형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나. 검토결과

- 1)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2) 감면대상 추가에 따른 조례개정 당위성 인정
 -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서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의무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해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요청함
 - 이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통해 기본복지를 지원하고자 함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됨.
- 3) 또한 개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붙임 1. 관련 법령 1부.

붙임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1. 10. 21.] 제73조의2